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8.3.22(목) 16:0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의영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에 생산라인을 신·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충북경제 4% 실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 및 모호한 용어 정비(안 제28조, 안 제29조)
 - ⇒ 산업통상자원부 고시(제2017-63호) 준용
- 나.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31조)
- 다. 사후관리기간 시점 통일 및 기간 단축(안 제36조)
 - ⇒ 투자기업이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통일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도내에 생산라인을 신·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

촉진과 충북경제 4% 실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